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고산종합사회복지관("발주처")과 "계약대상자"가 행하는 급식 식자재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물품)

- ①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가공품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 "발주처"가 공고당시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제시한 품목을 모두 포함한다.
- ②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된 모든 품목을 제시한 조건(식품의 품질, 규격, 사양 등)에 적합한 식자재 또는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규격이나 포장단위가 상이할 경우에도 우리가 제시한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식자재 및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③ "계약대상자"가 납품하는 모든 품목의 품질과 규격 등의 조건은 "발주처"가 공고당시 제시한 [납품 품목 별 준수 사항](붙임1)과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납품한다.

제3조(공급단가)

- ① 공급단가는 공고당시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 단가에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단가총액의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결정한다.
- ②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의 임의조정은 불가하다. 또한, 한번 조정된 금액은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 ③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발주시일의 "발주처"가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한 해당가격의 낙찰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정하되, "계약대상자"가 불합리한 가격이라 판단 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제4조(구매예정수량변동)

계약의 기준이 된 연간 계약금액과 공급수량은 "발주처"의 예산 및 전년도 구매 수량 등을 참조하여 산출함에 따라 미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계약대상자"는 계약된 단가로 계약기간까지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각 품목별 계약금액과 수량은 예정량이므로 "발주처"의 사정으로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발주방법)

-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온라인발주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배송일 기준 1일 전 17:00 마감이어야 한다.
- ②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발주 코드를 생성하고 코드별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발주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발주처"가 발급한 발주서에 의해 오전 9시 이전에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주방에 식당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식자재를 운반한 후에 인수, 확인 날인을 한 거래명세서를 "발주처"에게 교부함으로써 철저한 납품 관리가 되도록 한다.
- ③ "계약대상자"는 냉동(영하18°C이하), 냉장(5°C이하)차로 운반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식자재 검수 및 검사)

- ① 식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검수자에게 검수를 받은 후 인계하고, "발주처"의 검수완료 시점은 전처리 작업과정 중 품질에 문제가 없이 작업이 마감되었을 때에 완료된다.
- ② 우리 복지관이 납품된 식자재를 검수하기까지 발생한 식자재의 망실 또는 파손, 부식 등에 의한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 ③ "발주처"가 물품 검수 시 "계약대상자"가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 우리 복지관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재납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식자재로 지정한 시간까지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발주처"가 검수 시 품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입 회 하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위생관리)

- ① "계약대상자"는 공급할 식품에 대하여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생관리와 식자재 취급자에 대한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만약, "계약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한 물품의 공급과정이나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제반문제(식중독 등) 발생 시 일체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이 경우 "발주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② "계약대상자"는 식자재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및 작업장과 식자재 운반차량의 「소독확인서」를 월 1회(소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하며, 식자재 운반차의 위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서」를 1년 1회(계약체결 기간 동안 유효한 건강진단서) 계약체결일에 제출한다.
- ③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납품지시에 의거 원산지가 표시 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④ "발주처"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 보관, 위생상태를 불시 점검할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점검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계약대상자"가 제공한 식자재 또는 물품으로 인해 식중독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이 경우 "발주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계약대상자"는 생산물 책임배상보험(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계약체결일까지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우리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식자재를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해당 공급 가액을 이의 없이 "계약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2조(대금결제)

- ① 대금결제의 시기는 "발주처"와 "계약대상자"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검수완료 후 대금청구서를 제출한다.
- ② 결제방법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분할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관련 법령 개정 시 대가지급 기한 조정)

제13조(권리양도 등)

-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계약 기간 내 "계약대상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발생 시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가져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

- ①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자재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되어 있는 식자재의 품질, 전처리 규격, 포장 단위 등 미달의 식자재가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 된 식자재가 납품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식자재 또는 물품으로 인해 식중독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 조항의 경우 발생 즉시 계약 해지 가능)
 5.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식자재가 납품되지 않을 경우
 6. 식자재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반드시 식자재는 냉장, 냉동차를 가동하여 운송)
 7. 1차 식자재(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거래명세서에 하지 않을 경우
 8. 제7조에 의한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9. 기타 "발주처"의 검수자가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0. 반품을 요구한 식자재의 신속한 재 납품이 지연되거나 거부 등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11. 식자재에 원산지 및 유통기한, 제조업체 등 기타 표시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무표시 식자재를 납품했을 경우
 12.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마스크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의 경우

- ②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대상자”가 자격상실한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 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 ②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 납품 품목별 준수사항 >

가. 공통 기준

-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 한다.
-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 냉장차(가동중인 상태)로 운반하며,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 3) 식자재를 포장한 용기는 식자재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4)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않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 5) 모든 가공식품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및 기타 표시사항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6) 모든 식자재의 원산지는 거래명세표와 제품 포장이 동일해야 한다.
- 7) 납품 시 식자재의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10°C이하
 -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18°C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10°C이하
 - 일반채소: 15 ~ 25°C(상온)

나. 품목별 기준

1)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자재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자재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된 전처리 규격 및 품질에 적합한 품목을 납품 한다.

2)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자재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절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수산물의 개당 중량을 명시한 수산물은 개당 중량을 정확하게 맞춰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3)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C, 냉동육일 경우 -18°C이하로 납품한다.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한 축산물의 등급 및 냉장 상태를 정확하게 맞춰 납품한다.